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유공자’ 용어 사용 및 제3자 손해배상 등 >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89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유공자’ 용어 사용 등	3
2. 한국사회유공자회 신설	12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	19
III .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25

I. 개요

1.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8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2. 4.
- (3) 회 부 일 : 2025. 12.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구조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달리 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유공자’ 용어 사용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제명과 조문에서 ‘의사상자’라는 표현을 ‘사회유공자’로 변경하면서,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등의 신청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u>사회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u>의사상자</u> 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u>사회유공자</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의사상자</u> ”란 의사자 및 의	4. - <u>사회유공자</u> -----

현행	개정안
상자를 말한다.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제4조(<u>의사상자심사위원회</u>)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u>의사상자심사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u>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u>) ① ----- ----- <u>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u> ----- -----.
1. 제5조에 따른 <u>의사상자</u> 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 <u>사회유공자</u>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u>의사상자</u>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u>사회유공자</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u>의사상자</u>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 <u>사회유공자</u> -----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② ----- ----- ----- ----- ----- ----- -----

현행	개정안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u>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u>의사상자</u>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 ----- -----<u>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유공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에 3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인정신청 등) ① ----- ----- ----- ----- ----- ----- ----- ----- -----<u>사회유공자</u>-----. ② ----- ----- ----- ----- ----- -----

현행	개정안
에게 <u>의사상자</u>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의사상자</u>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u>의사상자</u>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u>의사상자</u>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	--<u>사회유공자</u>----- -----. ③ ----- ----- ----- ----- -----<u>사회유공자</u>-----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사회유공자</u>----- -----.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영전의 수여 등) -----<u>사회유공자</u>----- ----- ----- -----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 (생략)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u>의사상자의</u>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u>의사상자의</u> 구조행위로 인하여 <u>의사상자의</u>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사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11조(의료급여) ① (생략)	----- ----- --. 제8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사회유공자</u>-----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u>사회유공자</u>----- -----<u>사회유공자</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료급여)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u>의사상자</u>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는 <u>의사상자</u>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u>3년</u>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② ----- <u>사회유공자</u>----- -----. ----- ----- ----- -----.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 ----- ----- ----- <u>사회유공자</u>----- ----- ----- ----- ----- -----<u>5년</u>-----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의 목적¹⁾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사적 미담으로 남을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윤리를 지키기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의사상자²⁾’라는 표현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사회유공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취지임.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 다만, ‘사회유공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사상자라는 용어는 의(義)롭게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현재 사회적으로 널리 인지되어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사회유공자 등 별도의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구)「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³⁾이 제정된 1970년 이후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으며 관련 하위법령·행정지침·판례 등 전반에 걸쳐 정착되어 있는 개념이고, 동시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히 공유된 용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시 기존 법체계와의 연계성이 약화되고 해석 혼란 및 행정비용 증가 등이 우려되며 국민적 이해도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음.

□ 둘째, 사회유공자라는 표현은 사회에 공(功)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상 또는 사망을 당한 의사상자 뿐만 아니라 다른 공(功)이 있는 사람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상자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의사상자라는 표현을 사회유공자로 개정하면서, 사회유공자의 정의를 기존의 의사상자와 동일하게 의사자 및 의상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내용을

3) (구)「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의사자유족”이라 함은 의사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또는 조부모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별도로 확대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사회유공자라는 표현을 다소 협소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에 공(功)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특히, 의(義)라는 표현은 단순한 공(功)을 넘어 도덕적 결단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행위의 숭고성과 상징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3년에 비해 신청기간의 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의상자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4)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및 장제급여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제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의료급여법」 제31조⁵⁾에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5) 「의료급여법」

제31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한국사회유공자회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면서, 한국사회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및 경비 보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사회유공자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및 과태료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 ① 사회유공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이하 “사회유공자등”이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유공자등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유공자회(이하 “사회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회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유공자회는 정관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회유공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⑤ 그 밖에 설립 및 설립인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회원) 사회유공자회의 회원은 사회유공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정관) ① 사회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회칙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회유공자 발굴, 지원, 홍보, 교육, 연구 및 사회유공자 인정 지원 등 사회유공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8. 회계,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유공자회의가 정관을 변

현행	개정안
<신설>	<u>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u>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유공자회가 아니면 한국사회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신설>	<u>제2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
<신설>	<u>제25조(사회유공자회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유공자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유공자회에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유공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u>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생략) 제21조(벌칙) (생략) <신설>	<u>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유공자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사무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유공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제3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u>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7조(벌칙)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사회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현행	개정안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 현재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가 2021년 11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여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 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은 약 400만원 수준⁶⁾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사상자의 지원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식적인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개정안은 사회유공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이하 ‘사회유공자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유공자등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유공자회를 두도록 법에 명시하여, 보다 공식적인 단체를 설립하려는 것임.
- 사회유공자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6) 한국의사상자협회,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권익을 각자 챙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회유공자회를 통해 이들을 하나로 모아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 또는 사회에 공(功)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유공자에 대해서도 단체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2025년 12월 기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901건이나 의사상자의 생존여부 및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가족 수 등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2025년 12월 기준 의사상자 인정 현황 >

(단위: 건)

연도	'71~'18	'19	'20	'21	'22	'23	'24	'25	계
계	789	18	11	21	17	24	10	11	901
의사자	508	8	5	10	2	8	3	6	550
의상자	281	10	6	11	15	16	7	5	351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은 부칙 제6조7)를 통해서 사단법인 ‘한국 의사상자 협회’가 정관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한국사회유공자회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물적·인적 현황 및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는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95)

부칙

제6조(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등기된 사단법인 한국 의사상자 협회는 정관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한국사회유공자회로 성립한다.

□ 특히, 현행법⁸⁾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개정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사회유공자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 중 3인 이상을 한국사회유공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필요한 전문성과 객관성 등의 자격을 전적으로 한국사회유공자회에 맡기는 것이고, 곧 현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한국의사상자협회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한국의사상자협회가 개정안에 따른 한국사회유공자회가 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문제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회원의 자격을 사회유공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사상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뜻을 같이하는 일반회원’의 지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⁹⁾.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국의사상자협회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뜻을 같이하는 일반회원을 정회원으로 두어 월 1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음.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유공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u> ① 국가는 사회유공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이나 구조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 하여금 기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간을 정하여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제1항의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과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 ----- ----- ----- ----- -----.

현행	개정안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적극적 행위(이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여, 당사자 또는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⁰⁾

< 현행법의 적용범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현행법은 구조행위를 한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조대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와 그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현행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¹¹⁾,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만 구조행위 뿐 아니라 구조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결과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손해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공익적 목적, 즉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를 위해 행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체계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조행위로 인한 경우만 인정하거나, 의사상자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구조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 의사자유족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사자유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의사자의 경우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¹²⁾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승계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1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전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책임 등 상속분은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배우자의 경우 일정분이 가산될 수 있음¹³⁾.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되고, 이를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모든 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결국,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 간 분배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은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규정하지 않되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의사자유족이 각각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와 같은 취지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16)이 발의되어 2025년 9월 29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Ⅲ.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사회유공자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행정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의료급여 신청제한 기간 연장은 관계 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그와 밀접한 행위”는 제외하여 “구조행위를 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단체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적격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특정 단체를 ‘한국사회유공자회’로 지정하거나, 단체가 추천한 3인 이상을 의사상자 인정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전문성·객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문 의 처
02)6788-5497